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116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116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1551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로

담당변호사 김학목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단51551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9.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4. 19. 접수 제352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자인 A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의 의뢰에 따라 2018. 5. 11.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3. 5. 23.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A은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A이 2020. 2. 4.부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5. 19. 연체된 대출원리금 50,162,0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A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⑥ 위 ③항 및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제10조), 2018. 2.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10%이고, 회수금은 435,970원, 확정손해금은 119원이다.

라. 한편 A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18.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9. 4. 19.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352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1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약 281,069,000원(= D은행 79,000,000원 + E카드 19,069,000원 + C은행 50,000,000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13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A 소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0,000,000원이다[2022. 3. 18.자 F시세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한 최근 실거래가는 300,000,000원(2022. 1.경, 3층)이다].

(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A의 소극재산 합계는 251,227,121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에 대한 채무(제1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 : 49,726,247원 및 그 중 49,726,128원에 대한 2020. 5. 19.부터 2020. 6. 18.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2. 5. 11.까지의 원리금 합계액 61,461,612원[= (a) 원금 49,726,247원 + 그 중 49,726,128원에 대한 (b) 2020. 5. 19.부터 2020. 6. 18.까지 연 1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422,331원(= $49,726,128 \times 31\text{일}/365\text{일} \times 10\%$) + (c) 2020. 6. 19.부터 2022. 5. 11.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11,313,034원(= $49,726,128 \times (1\text{년} + 327\text{일}/365\text{일}) \times 12\%$)]

② D은행 채무 잔액 : 73,074,000원

③ E카드 채무 잔액 : 3,691,509원

④ 피고에 대한 채무 잔액 : 113,000,000원

(다) 결국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와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는 이상 A이

채무초과상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석현, 판사 최지아

별지